

제 452 호

1974.7.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대 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 전 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배	
제 864 호	서울특별시립 학교건강관리 소실치조제승개정조례	3
제 865 호	서울특별시 양묘장 설치조례	3
◎ 규	칙	
제 1380 호	서울특별시 양묘장 설치제승개정규칙	4
◎ 훈	령	
제 385 호	서울특별시 중기 운영 관리 규정	5
◎ 고	시	
제 84 호	사료성분 등록 고시	30
제 85 호	도시계획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 일부 지적 승인 고시	31
제 86 호	비료판매 영업 등록	31
제 87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 승인	32
제 88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 승인	32
제 8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 결정 (선설 및 변경) 및 지적 승인	33
제 90 호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 주차장) 결정 및 지적 승인	3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91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34
제 92 호	도시계획시설(녹지)지적승인	35
제 9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	35
제 94 호	사로성분등록갱신고시	36
제 95 호	사로성분등록고시	36
제 96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및지적승인	37
◎ 공 고		
제 123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점업체 지정 및 지정취소공고	38
제 124 호	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39
제 125 호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및 환지에정지 지정 일부 변경공고	39
제 126 호	주택지량물위한채개발사업실시계획공람공고	40
제 133 호	성북구석판동적인 및 제인개각공고	41
◎ 예 규		
제 274 호	시유재산관리및처분업무요령중 개정요령	41
◎ 사 령		42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학교 건강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년 7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하 점 성

○서울특별시조례제 864 호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정 1958.3.2.조례제 147호

4차개정 1974.7.5.조례제 864호

서울특별시립 학교건강관리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연구관리" 다음에 "와
진료"를 삽입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중 "및 질병
치료"를 삭제, 제4호를 "임상
각과에 해당하는 질병진료 및 처
방"으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중 "치료는 무료로 한다"를
"집단검진 및 간이한 진료는 무
료로 하고 수술, 입원 및 특수검
사를 요하는 질병의 진료는 실비

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다음
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②진료비의 실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양묘장설치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 장

1974년 월 일

○서울특별시조례제 865 호

서울특별시양묘장설치조례

제1조(설치)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제반 조림사업용 및 조원용 묘목의
양묘와 어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묘장(이하
"양묘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양묘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락동 410번지에 둔다.

제3조(직부) 양묘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가로수, 조원용 및 조림용 묘목
의 생산과 공급
2. 잔디 및 꽃묘의 생산과 공급

제 4 조 (공무원) ①양묘장에 장장을 두되, 장장은 3급을유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장장 이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조 (분장의 설치) 장장은 양묘사업 시행상 필요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묘장 분장을 설치하여 소속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서울특별시 규칙제 915 호(1970.5.20) 서울특별시 양묘장 직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규 칙

서울특별시양묘장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1974년 월 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80 호

서울특별시양묘장직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양묘장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내지 제 3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묘장(이하 "양묘장"이라 한다)의 조직과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장) ①양묘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지방농림기공사로 보한다. ②장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장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3 조 (조직) ①양묘장에 서무계와 사업계를 두고, 서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사업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 보한다.

②양묘장의 계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 무 계

- 가. 문서, 편인 및 기밀
- 나. 인사, 복무, 급여
- 다. 예산, 회계 및 용도
- 라. 물품 및 장비의 관리

다. 장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사업제

가. 양묘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포지관리 운영

다. 묘목, 잔디, 꽃묘생산 및 유지 관리

라. 각종 공사설계 및 시공감독

4 조와 제 5 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4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훈령 제 385 호

서울특별시중기운영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유 중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중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목나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보관관리) 서울특별시 소유 중기는 다음 각사업소에서 분배하여 보관 관리한다.

1. 중기관리사업소
2. 동부건설사업소
3. 남부건설사업소
4. 서부건설사업소
5. 여청사업소

제 4 조 (관리책임) 전조 각호의 사업소장(이하 "중기보유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당해사업소에 보관중인 중기에 대하여 그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 5 조 (사용허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기보유사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중기를 다른 기관(각국, 구, 출장소 및 자사업소등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기보유사업소중 중기관리사업소장은 자치 보유중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 6 조 (사용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장이 중기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용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사용승인) 건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사용 승인통지서를 신청기관에 송부하고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중기보유 사업소장에게 중기투입처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중기보유 사업소장에의 중기투입처시는 전언통신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8조 (사용료) ① 중기를 사용한 다른 기관의 장은 소정의 중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취토사업
2. 새마을 사업
3. 긴급재해 대책사업
4. 시장이 부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전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허가된 중기에 대하여는 사용기관에서 유류 및 제반 경비와 제 15조 제 1호

및 제 2호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9조 (중기사용관리등) ① 중기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에서는 중기의 사용기간중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기의 성능보호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중기투입을 위한 작업장의 선별은 사업 시행 주관과장(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기관장이 하 같다)이 직접 현장조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야 하며 무리한 작업의 강행으로 중기의 고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중기를 10일 이상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에서는 자주력이 있는 중기의 보관은 사용처에서 지정하는 장소(구, 출장소 및 사업소 방장등)에 집중 보관하고 열쇠는 담당과장이 보관한다.

3. 자주력이 없는 중기는 사용처에서 지정하는 작업장 부근에 집중 보관하고 사용처의 부담으로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사용담당 직장은 사용기간중 현장정비와 증기 부정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조종원은 사용기간중 증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사용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 10 조(일과후 관리) 증기보유 사업소장은 매일 일과 종료후 날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당일 현재분 증기 가동일보를 작성하여 숙직원에 게 인계하고 유사시나 불시점검시 증기가동 현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 11 조(사용시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된 증기의 사용시간은 08:00 부터 20:00 까지로 한다.

제 12 조(작업장순찰) ①증기보유사업소장은 증기작업장을 매주 2 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하여 증기가동실태 파악과 부정운행을 예방, 단속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5 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순찰은 일과시간전, 일과시간중, 일과시간후로 구분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제 13 조(정비 및 점검) 증기보유사업소장은 증기의 구조와 성능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정비; 조종원이 작업시행 전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정비담당제원이 확인 점검한다.
2. 주간정비; 조종원과 정비원이 주 1 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정비담당제장이 확인 점검한다.
3. 월간정비; 정비사가 월 1 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9 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소장이 확인 점검한다.
4. 종합점검; 건설행정담당관은 매분

기발에 각 증기보유사업소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증기관리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한다.

제 14 조 (증사원의 교육실시) 증기보유 사업소장은 증기증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월 1 회 이상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10 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증기관리 이론과 정비 및 수리기술교육
2. 봉사자세에 대한 정신교육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 15 조 (정비구분) 증기의 단계별 정비는 다음 2 호와 같다.

1. 1 단계정비: 엔진오일점검, 다이어 공급점검, 각 게이지 및 에어크리나 점검, 풀, 기아오일, 기타 조종원이 점검가능한 사항
2. 2 단계정비: 각 부분 주유(구리스), 밧메리액, 부레키오일, 엔진오일교환, 각 에페먼트 세척, 각부 기아유 보충
3. 3 단계정비: 에어크리나오일교환,

부라지 및 에어크리나 세척, 각 벨트 및 발브조정, 각부 볼트 및 너트조임

4. 4 - 5 단계정비: 정비공장에서 고도의 기술로 광범위한 정밀수리물정비사가 실시한다.

제 16 조 (증기이력카드비치) 증기보유 사업소장은 증기별 이력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카드를 별지 제 11 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17 조 (조종일자) 조종원은 작업완료후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한 증기조종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증기출입고 기록부) 증기보유 사업소장은 모든 증기의 정문출입상황을 별지 제 13 호서식에 의한 증기출입고 기록부에 기록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고보고) ① 증기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종원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경위를 지체없이 소속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전항의 사고발생후

24시간 이내에 사고경위를 시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월간보고) 중기보유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월간보고서를 매월 3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기작업소장 순찰결과보고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함)
2. 중기정비 및 점검결과보고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함)
3. 중기종사원 교육실시결과보고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함)
4. 중기세입실적보고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함)
5. 중기조종원 근태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함)
6. 중기가동실적보고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함)

제 21 조 (세입보고) 각 중기보유사업소장 (역청사업소장은 제외한다)은 중기사용 및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유상 , 무상) 에 대한 세입보고서를 별지 제 14 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근태보고) 중기보유사업소장은 소속 중기종사원 (조종원 정비원

조수) 에 대한 근태보고서를 별지 제 15 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가동실적보고) 중기보유사업소장은 보유증거에 대한 가동실적보고서를 별지 제 16 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가동일보) 중기보유사업소장은 보유증거에 대한 가동일보를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10:00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사용대장비치) 중기보유사업소장은 보유증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17 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대장에 가동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거예규) 서울특별시 예규제 201 호 (1969. 10. 10) 중기관리 운영요령은 이를 제거한다.

<별지제1호서식>

증 기 사 용 신 청 서

증 기 명	수 량	사용예정기간	일수	사용장소	사 업 명
		자 지			
		자 지			
		자 지			
사용료 지번과목					
사 업 개 요					
사 용 료	일금 원				

위와같이 증기사용료지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구 청 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서울특별시청 귀하

<별지제2호서식>

증기 사용 승인 통지서

증기명	수량	사용승인기간	일수	사용장소	사업명
		자 지			
		자 지			
		자 지			

사용승인조건

귀(구, 소, 파)에서 신청한 증기품 위와같이 사용 승인하오니 당서 증기관리 사업소에서 현품 인수하기 바람.

197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별지제 3 호서식>

증 기 투 입 지 시 서

증 기 명	수량	투 입 기 간	일 수	사 용 장 소	사 업 명	사 용 기 관
		자 지				
		자 지				
		자 지				

사용 승인 조건

위와 같이 증기투입을 지시함.

197

서울특별시장

증기관리사업소 앞

<별지 제 4 호서식>

중 기 가 동 일 보

수 신

197

작성 자 직 명

사 업 소 장

⑧

중기 가동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종 별

보유대수	유상	대기	고장	취로사업	새마을사업	청소	기타	%	비고

2. 기종별 가동현황

가동사항 기종별	제	유상	대기	고장	취로	새마을	청소	기타	비고

<별지 제 5 호서식>

중기작업장 순환결과보고

(월분)

일 일	순환 시간	작업장 및 단 속	적발 지도 사 항	시 정 사 항	순 환 자 적 성 명

<별지 제 6 호서식>

중기정비점검실시결과보고 (월 분)

사업소

순위	중 기 영	제	일 일 정 비			주 간 정 비	
			작업전정비	작업중정비	작업후정비	일반수입	착 대 리
	제						
1	불 도 자						
2	베 이 로 다						
3	기 계 차						
4	담 푸 추 력						
5	트 렉 트 렉 타						
6	추 렉 라						
7	크 벨						
8	모 다 구 레 이 다						
9	로 드 로 라						
10	람 마						
11	프 레 이 트						
12	크 맞 샤						
13	아스팔트위니샤						
14	푸 렌 트						
15	켓 물						
16	공 기 압 속 기						
17	발 전 기						
18	제 실 기						
19	철 공 지						

순 위	중 기 명	주간정비		월 간 정 비				비 고
		부레키및 발트상대	생각예용	엔진오일 교 교환	엔진반부 조	에어필트 교 환	에비레타	
	계							
1	볼 도 자							
2	페 이 로 다							
3	기 계 차							
4	담 푸 추 력							
5	트 렉 트 렉 타							
6	추 레 라							
7	크 벨							
8	모다구레이다							
9	로드 로 라							
10	람 마							
11	프 레 이 트							
12	크 랫 샤							
13	아스팔트위너샤							
14	• 푸멘트							
15	• 캣 블							
16	공 기 압 축 기							
17	발 전 기							
18	제 설 기							
19	천 공 기							

<별지 제 7 호서식>

중 기 일 일 정 비 작 업 표

(년 월 일)

1. 작업전정비 (조사 및 작업)개소	상 태	비 고
연료, 오일, 물 (레벨)		
에어크리나 (오일 레벨)		
각부의 누유개소 (연료, 윤활유, 수)		
조정제통작동 (계기포함)		
타이어 및 트랙		
제 동 장 치		
엔 진 큰 디 스크		
2. 작업중 정비개소		
각부의 누유개소 (연료, 윤활유, 수)		
엔진 및 차체잡음		
조정제통 작동 (계기포함)		
3. 작업후 정비개소		
장 비 철 소		
급유표에 의한 각부 주유		
연료, 윤활유, 수 (레벨)		
타이어 및 트랙		
각부 누유개소 (연료, 윤활유, 수)		
케블 및 체인		
공 구 정 비		
정확시 교정상태		

기 재 사 항

중기책임자 또는
원장대리인성명

조정원성명

①

②

<p><별지제 8 호서식></p> <p>중 기 주 간 정 비 작 업 표</p> <p>년 월 일</p>			
중기번호	중기제명		
형	일련번호	사용시간 또는거리	
	정 비 작 업 내 역	상	배
1	각부주유및 교체상태		
2	일 반 수 입		
3	공 구 및 부 수 장 치		
4	엔진오일및 기야오일		
5	엔로급오일필타에레멘트		
6	에 어 크 리 노 오 일		
7	냉 각 계 통 (부 동 액)		
8	бат메리정비(볼트근비중액)		
9	타 아 야 폭 은 트 락		
10	도타구링구및 타이뭇드		
11	써 비 스 부 레 키		
12	비 상 부 배 키		
13	마 스 타 스 왓 치		
14	스 타 링 기 야		
15	각 메 타 및 캐 이 지		
16	후레입및기타용접개소		
17	엔진콘디션		
18	후장베르드		
19	누설개소(오일셀가스랩드)		
20			
21			
22			
23			

<별지제 9 호서식> 중 기 월 간 정 비 작 업 표 197

중기명	중기번호	일련번호	시간또는 비고
순위	작업내용	상 태	비 고
1	각부주유 및 교체상태		
2	일 산 수 입 상 태		
3	공구 및 부수장치 수입		
4	엔진 발 보 조 정		
5	냉각장치점검 (부동액 점검)		
6	엔진오일 교환 및 기야오일보충		
7	후왕 벨트 텐슨		
8	퓨얼 및 오일필타침소 및 교환		
9	에어크리나 청소		
10	스파구푸라구 및 밧메리수입		
11	수타-타 제네레타 점검		
12	되스트리뷰다 및 마그넷드 점검		
13	코일백신 스위치 점검		
14	배구레다 점검		
15	혼 (구락송) 점검		
16	스타아빙기야앗셈 (펠들) 점검		
17	각종 케이지 및 메타점검		
18	동력조절장치 점검		
19	타이웃드 도라구 밀구 점검		
20	타이야 점검 및 압력보충		
21	스프링부라켓드 붓심 점검		
22	트랙조정장치 상태 점검		
23	마스타 그랏치 점검		
24	서비스부라키 및 비상부라키점검		
25	안모-다 (압력조절장치) 점검		
26	코들셀 스크린 점검		
27	토글루라이트 및 시드점검		
28	공페아 및 베티드 점검		
29	오일바나 점검		
30	카팅에지 및 엔드벳드점검		
31			

중 기 이 력 카 - 드

234

중 기 사 진			중기명	규 격	등록번호
중 기 사 진			제작회사명	행 정 식	사 용 연 로
중 기 사 진			년 시	마 렷	연로소모량
중 기 사 진			노 벨	전 장	봄 길 이
중 기 사 진			액진번호	건 표	연프량크용량
중 기 사 진			일련번호	전 륜	취득년월일
중 기 사 진			기 용 수	적재함규격	취득금액
중 기 사 진			승카인원	타이어규격	취 득 처
중 기 검 사			조 중 원 사 항		특 기 사 항
검사년도	유 효 기 간		조종원명	취득경허	발명기간
	자	발			
	지	행			
	지	정			
	지	화			
	지	살			
	지	상			
	지	행			
	지	정			
	지	화			
	지	살			
	지	상			
	지	행			
	지	정			
	지	화			
	지	살			
	지	상			

제 452 호

식

표

1974. 7. 11 54-21

세입사항		세출사항			카동사항			공구사항						
년도별	세입액	증기비	기타	제	표 기동시간	순 간	가 동 시간	%	공구명	규격	수량	공구명	규격	수량

54-22 제452호 시 보 1974. 7. 11

주요 수리 사항							비고
년월	기관보링	밧송교환	트머교환	하부트린 교	다이아교환	봉교환	

제 452 호 시 보 1974. 7. 11 54-23

<별지제 12 호서식>

중 기 조 정 일 지

일 자		중기명		중기번호	계 호
일련번호		형		등록번호	계 호
전실공사명				작업시간	작업거리
작업장소및 구 간				작업개시 시간	자
연료소모량				작업종료 시간	지
운 활 유 소 소 모 량	EO	GO	GAA	총 작업 시간	계

작업내용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거리		토질조건 및 작업조건
	개시	종료	자	지	

비 고 (중기상태를 명기할 것)

조종원성명

①

중기책임자또는원장대리인
성 명

②

<별지제 13 호서식>

중 기 출 입 교 거 록 부

결 계			년월일	중기명	규격	중기번호	출교목적	시 간	
소	관	계원						출교	입교

<별지제14호서식>

월 분 세 입 실 적 보 고

사업소

구 분 세 입 별		합 월 분			누 계			비 고
		계	중 사 용 료	경 수 수 료	계	중 사 용 료	경 수 수 료	
목 표 액	계							
	유 상							
	무 상							
조 정 액	계							
	유 상							
	무 상							
정 수 액	계							
	유 상							
	무 상							
대 비 (목표정수)	계							
	유 상							
	무 상							

<별지제 15 호서식>

중기조종원근태사항보고(월분)

사업소

위반사항	구 체 적 내 용	조 차 내 용	관련자적성명

<별지 제 17 호 서식>

증 기 사 용 대 장

소장	제장	제원	결 계		증 기 명	규 격	증 기 번 호	사 용 목 적	사 용 시 간
			년월일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4 호

사료 성분 등록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에 대한 동

록이 있었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4. 6.

서울특별시장

사료 성분 등록 사항

공 광 명	소재지	대 표	사 료			사 료 성 분 량				유효기간
			종 류	명 칭	용 도	조 배 단 질	조 지 방	조 삼 유	조 화 분	
양주지구 축산협동조합	도봉동 282	양학승	배합사료	브로일러 전기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4 주 까지	19.0 %	2.5 %	6.0 %	9.0 %	1974.6.11 ~ 76.6.10
"	"	"	"	브로일러후기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3 개월 까지	16.0	2.5	6.0	10.0	"
"	"	"	"	큰 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 13 주부터 출산까지	12.0	2.5	7.5	10.0	"
"	"	"	"	고깃소송기 배합사료		13.0	2.0	11.5	11.0	"
"	"	"	"	고깃소후기 배합사료		11.0	2.0	10.0	10.0	"
"	"	"	"	고깃소전기 배합사료		15.0	2.0	13.0	12.0	"

◎서울특별시고시제 85호

도시계획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 일부지적승인 고시

1. 건설부고시제 470호 (73.12.1) 로 지정된 도시계획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 중 일부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겠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개발 2과 및 관할 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7.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 조서

번호	구역명칭	위치	면적	비고
6-19	응암제 2 구역	응암 2 동 243 번지일대	179,100㎡	주택개발
9-29	봉천제 5 구역	봉천동산 102 번지일대	78,800㎡	을 위한
8-4	한남제 1 구역	한남동 726 번지일대	39,000㎡	재개발
1-7	명륜구역	명륜동 3 가산 3-15 일대	100,000㎡	.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당시 주택국 개발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86호

비로판매영업등록

다음과 같이 비로판매영업등록을 하

있기 비로단속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4.7.3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등록 또는 교부날일	판매자주소 설명 및 판매장소제지	비로명칭	보증성분량	기타특
1-2	등록 ; 1974.7.3	1. 주소 ; 서울특별시종로 5 가 243 2. 설명 ; 권 기 술	제 5 중부합 비로 (맥제) 일명 ; 복살	질소 ; 4% 인산 ; 4% 카리 ; 3%	미량요 소각종

유효기간 ; 1974.7.3 ~ 1977.7.3

◎ 서울특별시고시제 87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조서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7.4

서울특별시장

순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학 교	시흥군서면광명리산 90 번지부근	7,567명 (24,970㎡)	

별첨 ;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88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조서

4.4)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7.4

서울특별시장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학 교	시내 성동구가락동 41.1-3 의 2 필지	800명 (2,640㎡)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8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신설및변경)및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결정(신설 및 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노선구서(별첨)

나. 관계도면(별첨)

1974.7.4

서울특별시장

별첨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에 보관함.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종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가정	소로	2		8m	150m	태평로2가 248-8	서소문동 90-1	
변경	"	"		"	124m	" 305-3	"	계개할거구 구획형상판계 로 조정
폐지	"	"		"	93m	" 280-5	태평로2가 242	중로 3-87 선 신설로 폐지
신설	"	4		4m	80m	" 259-1	" 266	
기정	"	3		6m	240m	상도동 210-26	상도동 295-9	
변경	"	"		"	"	"	"	계설도로로 위치변경
폐지	"	"		"	40m	창건동 42-4	창건동 42-2	

㉔ 서울특별시고시제 90 호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주차장)
결정및 지적승인

1. 당시의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주차장시설조서

제 128 호(73.4.4)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7.4

서울특별시장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시내버스주차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문래동 5가 8	3,300㎡ (1,000평)	신촌운수주식회사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㉕ 서울특별시고시제 91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관내 도시계획시설중 건설부고시 제 181 호(74.6.10)로 시설결정 고시된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가. 지적승인조서

호(73.4.4)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7.4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중로	3	87	12m	93m	태평로 2가 (광로 4호)	태평로 2가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92 호

도시계획시설(녹지)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제 181호(74.6.10)로 시설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4호(73.4.4)가. 도시계획 녹지시설 결정조서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4.

서울특별시장

단위:㎡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녹 지	용산구청파동 2 가일부지역	1,658	신 설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93 호

도시 계획 시설 (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호(73)가.로 신 조 서

4.4)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4.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1		11.0	152.0	신촌동 81-18	신촌동 74-5	이대후문전입로
"	"	1		11.5	1,050	창 동 412	월계동 728-2	새마을도로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94 호
 사료 성분 등록경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 2 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분등록경신을 고시한다.
 1974. 7. 5.
 서울특별시 장

등록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4-60	신영사료공사	서울특별시성동구 충곡동 518-116	장진학	배합사료	부토일라전기 배 합 사 료	부화후대학 4 주 까지
4-53	"	"	"	"	큰병아리배합사료	부화후대학 13주~ 초산까지 (전기)

등록번호	사 료 성 분 량				유효기간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조난백질	조지방	조삼유	조회분		
4-60	19.0%	2.5 %	6.0%	9.0%	자 74.7.24 지 76.7.23	유효기간 1972.7.24 부터 1974.7.23 까지 불 등록경신공고함.
4-53	12.0 #	2.5 #	7.5 #	10.0 #	자 74.7.24 지 76.7.23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95 호
 사 료 성 분 등 록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 의 규 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분등록을 고시한다.
 1974. 7. 5.
 서울특별시 장

등록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4-77	신영사료공사	충곡동 518-1116	장진학	배합사료	어분기초배합사료	어분기초배합사료
4-78	"	"	"	"	식물성박류 기초배합사료	식물성박류기초배합사료
4-79	"	"	"	"	농축배합사료	양계용농축배합사료
4-80	"	"	"	"	"	양돈용농축배합사료
4-81	"	"	"	"	"	축우용농축배합사료

사 모 성 분 량				유효기간	비 고	원 로 별 배 합 율
최 소 량	최 대 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50.0 %	5.0 %	2.5 %	20.0 %	74. 7. 5. 76. 7. 4.		어분 95% 채증박 5% 계 100 #
35.0 %	3.0 %	8.0 %	7.0 %	#		어분 5% 채증박 95% 계 100 #
16.0 %	2.0 %	4.5 %	13.0 %	#		옥수수 70# 골분 2# 어분 12# 폐분 3# 채증박 5# 기울 3# 대두박 5# 계 100 #
16.0 %	2.0 %	4.5 %	13.0 %	#		옥수수 70# 골분 2# 어분 12# 폐분 3# 채증박 5# 기울 3# 대두박 5# 계 100 #
16.0 %	2.0 %	4.5 %	13.0 %	#		옥수수 70# 골분 2# 어분 12# 폐분 3# 채증박 5# 기울 3# 대두박 5# 계 100 #

◎ 서울특별시고시제 96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다음과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동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 (73.4.4)의 규정에 따라 이물 # 주차장 시설결정 조서 #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9.

서울특별시장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내버스주차장	홍은동 287외3	2,336.4 (708명)	현대교통주식회사
"	오류동 91 " 90-10	3,187.8 (966명)	새풍문수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출장소)에 보관함.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23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 지정 및 지정취소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

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와 지정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6. .

서울특별시 장

1. 지정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74수출 목표액
444	아세아통상(주)	김병일	성동구상왕십리동728-9	프라스틱인형	250,000\$
449	크로바산업(주)	조성현	성수1가26의1	완구	1,200,000\$
509	명림전자상사	김명범	성북구동선동1가32	트랜자스터	90,900\$
903	평동계약(주)	최수부	영등포구시흥동615-1	인삼차	83,476\$

2. 지정취소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1208	경도섬유공업(주)	윤영길	성동구천호동217-14	세타	대기업으로 전환 (중소기업탈피)
1209	동양전기산업(주)	최금우	성동구풍납동281	건전지, 면도기	·
801	동양제빙냉장(주)	김무기	용산구문배동24-4	인조빙가발	·
805	미원산업(주)	이상진	한강로2가197	세타	·
810	미성상사(주)	지종상 정진영	원효로1가57-12가	발	·
906	일신기업사	박창중	영등포구구로동170-10	메리야스	한국수출산업공단입후업체
948	금신산업(주)	표창준	영등포구고척동76-14	작업용장갑	대기업전환, 중소기업탈피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주소 사용
992	홍분암치(주)	김경국	영등포구양명동 267	염색가공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이주
935	신안전기공업(주)	박지수	영등포구문래동5가27	변압기	대기업으로전환중소 기업체 합회
936	경동산업(주)	최정환	영등포구문래동3가71-2	스탈레스기 양식기	.
949	삼성공업(주)	김익열	영등포구교척동 98	정식용간기	.
1519	봉우산업(주)	장세원	영등포구염창동 55-2	정식용간기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이주

◎ 서울특별시공고제 124 호

환지역정지변경지정광고

1.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역정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와 제 55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역외를 변경인가 하고 동법제 56 조와 서울특별시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역정지를 변경지정 하였기 공고한다.

2. 환지 예정지 변경지정조서 및 도면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 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서투로 송달될것이나 더수명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1974. 6. .

서울특별시장

공 랑 계 요

1. 사업명 :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 상동구, 길동 명일동, 천호동 들촌동 일부
3. 변경필지수 : 36 필지
4. 변경지정조서및도면: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25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및환지역정지지정일부변경공고

1. 서울특별시 시흥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사업계획(모토계획) 일부를 변경과 같이 변경인가함과 동시에 환지에정지를 변경지정하였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13조와 제 34조, 동법제 56조 및 동법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에정지가 변경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수익할수 없을 경우는 사유가 해소되는날로부터 사용수익을 하게한다.

3.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사업계획 및 환지에정지 변경도서(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

1974. 7. 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126 호

주택개발을위한재개발사업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145 호(74. 5. 13)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중 다음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5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코자 도시계획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공람에 공고하고자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개량 2과에 비치하며 재개발사업 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별도로 그내용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공 랠 계 요

가. 사업명: 영등포구 교척구역 재개발 사업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1974. 7. 1.

서울특별시장

가. 시행구역조사

번호	구역명칭	위치	면적	건물동수
9-17	구척구역	영등포구고척동62번지일대	28,810㎡ (87㎡중)	166동

별첨 : 조서및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33 호

성북구석관동직인및제인개작공고

성북구 석관동장직인 및 제인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개작하였기 동조례 제 9 조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

1974. 7. 1

서울특별시장

- 1. 개작사용일자 74.7.15
- 2. 공인의 인영



3. 인의형상 경 4 자형 한글전서체



◎ 서울특별시에규제 274 호

시유재산관리 및 처분업무 요령중 개정요령

시유재산관리 및 처분업무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중 "라"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점유재산중 점유자가 예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할 동장에 점유사실 여부를 조회 또는 현장조사하여 분쟁여부를 확인한후 매각에 앞서 점유기간에 상당한 손해금을 소급하여 징수하고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예규는 197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예규 제 271 호 일부개정 (시유재산관리 및 처분업무요령)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시유재산관리 및 처분 업무요령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라 호</p> <p>점유재산증 동장이 발급하는 점유확인서를 첨부하여 매수신청이 있을때에는 매각에 앞서 점유 기간에 상당한 손해금을 소급하여 징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시유 재산관리 및 처분업무요령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의 라 호</p> <p>점유 재산증 점유자가 매수신청이 있을때는 관할등장에 점유사실 여부를 조회 또는 현장조사하여 분쟁여부를 확인후 매각에 앞서 점유기간에 상당한 손해금을 소급하여 징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동장발행 점유확인서 제도 폐지도 조회 또는 현장조사로 대체</p>

사 명

© 1974.6.29

정영수

© 1974. 6. 20

지방약무기원보시보에입함

지하철본부 지방통신기사보

김중호 1호봉을 급함

지방통신기사보에입함.

종로구보적소 근무를명함

1호봉을 급함

강영자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입함

1호봉을 급함

영동포병원 근무를명함.

<p>허 현 자</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영동포병원 근무를 명함</p>	<p>이 영 희</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김 순 희</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영동포병원 근무를 명함</p>	<p>김 경 선</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도봉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구 미 자</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최 금 너</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관악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이 은 애</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p>© 1974. 7. 1 노동위원회 행정주사 고령도 사무국 행정사무관 임함</p>
<p>김 경 임</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2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교수부교학과 근무를 명함 비상계회관원 지방행정사무관 원지일 행정사무관에 임함</p>
<p>정 산 아</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12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교수부 근무를 명함</p>
<p>김 순 희</p> <p>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1974. 7. 1 대 통 령 공무원교육원교학과 행정사무관 고령도 원교학과 공무원교육원교학과 운영계장에 포함</p>

공무원교육 행정사무관 원지연
 현 교수부
 안전담당관 직무대리를 명함
 상동구외동 지방행정서기보 박홍수
 중구근무를 명함

◎ 1974. 7. 3.
 토목과 지방토목기사 서희석
 하수과하수시설계장직무대리를 명함
 조경과 지방토목기사 김정근
 마포구토목과장직무대리를 명함
 하수과하수 시설계장 유봉환
 구회정리 1과환지 1계장을 명함
 하수과하수 관리계장 최종무
 구회정리 1과정지계장을 명함
 마포구토목과장 신정부
 과장
 하수과하수관리계장을 명함
 구회정리 1과 지방토목기사 마도진
 정지계장
 토목시험소토질과장을 명함
 상북구 지방농림기사 지병진
 관악구녹지과장직무대리를 명함
 관악구 지방농림기사 이현
 성북구녹지과장직무대리를 명함

◎ 1974. 7. 4
 시민과 지방행정주사 이철수
 관악구근무를 명함

◎ 1974. 7. 5
 영등출장소 지방행정서기보 고정환
 대동명비서실파견근무를 명함

◎ 1974. 7. 9
 시정개발 지방행정주 최병철
 담당관실 사보시도
 임용연기로 인하여 74.6.25일자
 (발령제 576호) 신규임용발령을 동일자
 로 취소함.
 하수과 지방토목기사보 현정
 지방토목기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하수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염성호
 74.6.12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자
 면처분취소)에 의하여 72.6.21자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1.2호
 규정에의한 파면처분을 동일자로취소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p>동대문구수도지방행정 사무소주 사무소 74. 6. 11 자 제정원관결 (상 표기각) 서울고등법원관결 판결지분취소 에 의하여 72. 6. 21 자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1, 2 호규정 에 의한 판결지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p>	<p>최윤옥 남호수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김정옥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심복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김옥량 지방통신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p>
<p>○ 1974. 7. 10 마포구 지방토목 사무소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사무소 마포구 근무를 명함.</p>	<p>유재정 박병희 방호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간호 보건의소 기사보 부직을 명함.</p>
<p>최재순 이영순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 1974. 7. 11 도봉구 행정 사무소 최동영 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방호담당 지방행정 사무소 김창수 정소 1 과 근무를 명함. 예산담당 지방행정 사무소 조재호 기획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사무소 이보규 예산담당관실 근무를 명함.</p>

청소 1 과 지방행정사	김선범	마포구 지방행정사	과금양
수발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중로구 지방행정사	최천주	중구 지방행정사	정준민
서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		진실행정과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사	주원진	용산구 지방행정사	안은현
시민과 근무를 명함.		운수 2 과 근무를 명함.	
시설관리과 지방행정사	김규영	은평출장소 지방행정사	홍란기
시민과 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과 근무를 명함.	
판재과 지방행정사	이범래	판재과 지방행정사	김도균
인사과 근무를 명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	
개량 1 과 지방행정사	이동식	성북구(주택행정과파견) 지방행정사	김동규
인사과 근무를 명함.		주택행정과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행정사	김재중	사회과 지방행정사	이규삼
판재과 근무를 명함.		보건예방과 근무를 명함.	
정보통신소 지방행정사	신우현	보건예방과 지방행정사	김중래
회계과 근무를 명함.		사회과 근무를 명함.	
중로구 지방행정사	정원근	영동출장소 지방행정사	조태웅
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회계과 근무를 명함.		사회과 지방행정사	이윤형
청소 1 과 지방행정사	김강석	판재과 근무를 명함.	
공업과 근무를 명함.		주택행정과 지방행정정보	김창복
공업과 지방행정사	이민우	문화공보실 근무를 명함.	
주택행정과 근무를 명함.		업무과 지방행정정보	하갑수
양서출장소 지방행정사	박재상	판재과 근무를 명함.	
주택행정과 근무를 명함.			

관 계 과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안 영 익	중 로 구 지 방 행 정 서 서 기 보	홍 중 선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중기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사 회 과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조 사 선	성 부 구 지 방 행 정 서 서 기 보	김 영 수
용산구 근무를 명함.		남부복지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 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최 용 제	관 악 구 지 방 행 정 서 서 기 보	박 석 주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방 호 담 당 지 방 행 정 실 주 사 보	박 용 일	중 구 지 방 행 정 서 서 기 보	이 영 자
업무과 근무를 명함.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박 길 금	성 동 구 지 방 행 정 서 서 기 보	이 재 국
방호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 방 행 정 주 사 보	김 우 식	동 대 문 구 지 방 행 정 서 서 기 보	사 공 호
방호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안 속 과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조 현 재	마 포 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김 태 부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황 용 환	성 동 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이 하 기
수원과 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마 포 구 지 방 행 정 서 서 기 보	홍 성 태	동 부 병 원 지 방 행 정 주 사 보	홍 재 경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 방 행 정 서 서 기 보	김 현 국	서 대 문 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홍 성 완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중 구 지 방 행 정 서 서 기 보	박 용 성	영 등 포 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이 용 환
아동보호소 근무를 명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 방 행 정 서 서 기 보	송 인 장	영 등 포 구 지 방 행 정 주 사 보	박 지 명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동토구 지방행정 주사보	교연상	성북구 지방행정 주사	한규익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남대문근로자회관 근무를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주사보	김응복	지하철본부 지방행정 주사	김규원
한강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행정 서기	임무환	순찰담당실 지방행정 주사	이외백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박상준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황규진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행정 서기	하일주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이준민
도봉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행정 서기	손현석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송만섭
성동구 근무를 명함.		표지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	
행정과 지방행정 서기	박상국	한강건설 지방행정 사업소 주사	신영우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 주사	최심용	성동구 지방행정 주사	박인형
시정개발담당관실파견 근무를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	권학용	종로구 지방행정 주사	조용근
감사담당관실파견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주사보	전봉현	관악구 지방행정 주사	신영식
공업과파견 근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이춘재	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	유인홍
지하철본부 파견 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남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김영호	관악구 지방행정 주사	홍순찬
종로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서정용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 기	유정수
종로구 관공물 명합.		마포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성동구보건소 지방행정 주 사 보	김준영	용 산 구 지방행정 서 기	문경동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마 포 구 지방행정 수 사 보	이기설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 기	이교용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관악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 사 보	권인식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 기	곽옥열
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중로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도 봉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김필구	마 포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 기	조용복
죽도수원지사무소 근무물 명합.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대현산배수지 지방행정 수 사 보	박병만	성 동 구 지방행정 서 기 보	이광섭
도봉구 근무물 명합.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동대문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 기	유영우	관 악 구 지방행정 서 기 보	홍상기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노량진수원지사무소 근무물 명합.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서 기	최경구	불 광 동 지방행정 보조수원지 서 기 보	박용빈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은평출장소 근무물 명합.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서 기	유창기	중 루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 기 보	김석택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 기	오준식	동대문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전재석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 기	장용배	중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유관형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관악구 근무물 명합.	
도 봉 구 지방행정 서 기	박찬용	중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 기 보	이현정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물 명합.		은평출장소 근무물 명합.	

중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보	하남 식	용 산 구 지방행정 서기보	배종희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부병원 지방행정 서기보	이인표	중 로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보	김진욱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장미성	관 악 구 지방행정 주사보	오창환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나금남	친호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	김동규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마 포 구 지방행정 서기보	이용석	도 봉 구 지방행정 주사보	김용현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연중	도 봉 구 지방행정 주사보	이준용
마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정면	용 산 구 지방행정 주사보	안필순
중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방행정 서기보	박근홍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신태욱
도봉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	양재집	중 구 지방행정 주사보	박양표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병선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정면익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은명출장소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 서기보	한용대	중 구 지방행정 주사보	권오성
영동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구진	은명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	임태손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	김종필	성북구	지방행정 서기	이기권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전보걸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기보	차상업
도봉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서기석	마포구	지방행정 서기	강일식
관악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박용노	마포구	지방행정 서기	권병구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서기	김승택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효권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백석빈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이창태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	전인승	마포구	지방행정 서기	박용호
관악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 서기	이재현	도사가스	지방행정 서기	조인석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사업소	서기	
마포구	지방행정 서기	박준원	종로구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서기보	강성태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유동규	도봉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김정재
성동구	지방행정 서기	민창기	중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 서기	이상호
성동구	지방행정 서기	이재창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서기보	이준배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신종섭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위승환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 서기보	강영환	도봉구 지방행정 서기보서보	김중희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이정순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보	양중찬
관악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강부형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보	이정규
마포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조재호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현국
성동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정명영	도봉구 지방행정 서기보	배우서
도봉구 근무를 명함.		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박학서	동대문구 서기	신은범
성동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서기보	서경관	성북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보	최장균
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서기보	박수용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대진
종로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서기보	장용진	영등출장소 지방행정 서기보	김외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서기보	신일근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기보	한상호
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박용철	종로구 지방행정 서기	김상근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설 부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이 명 용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이 명 욱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봉 구 지 방 행 정 기 보	한 창 수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진 계 철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오 병 기	성 동 구 지 방 행 정 기 보	박 상 진
성동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 방 행 정 기 보	정 재 언	설 부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이 태 동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윤 한 식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왕 수 오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영등출장소 지 방 행 정 기 보	봉 명 운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박 승 조
성동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 방 행 정 기 보	박 경 숙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원 용 만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마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송 선 호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조 세 혁
관악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 방 행 정 기 보	박 상 기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노 승 균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안 기 환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유 근 식
관악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영 형 욱	용 산 구 지 방 행 정 기 보	공 병 윤
관악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박 중 관	영 동 포 구 지 방 행 정 기 보	박 수 국
관악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조규준	충북괴산군	지방간호 소기원보	연인순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심대섭	지방광호거원보에	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2호봉을	급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서기	이규용	관악구보진소	근무를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순천시	지방간호 소기원보	정영래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김학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거원보에	입함.	
도시가스	지방행정 서기보	김재홍	8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진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주정환	인천시	지방약무 소기원보	오철근
중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정규	지방약무거사에	입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4호봉을	급함.	
○ 1974. 7. 15			관악구보진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청